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제 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통일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의결주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개정, 제6조제3항·제6항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제출하던 것을 그 해 1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2)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함.

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해촉시 신규위원의 임기 조항 마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1 -

대통령령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연도별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연도별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도별시행계획”을 각각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변경)”을 “(기본계획 등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연도별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기본계획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을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해 12월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연도별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3 -

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점검을”을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을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호 중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기본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2조”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제2호”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①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2(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서 정한 정책 목표	-----
2. (생략)	-----
②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 ① -----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설>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4조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 기본계획동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
<신 설>	⑥ 통일부장관은 제14조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동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 사항) -----.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동-----.
2.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 제12조의2-----.
3. 4. (생략)	3. 4. (원행과 같음)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① ----- 법 제14조-----.

1. ~ 4. (생략) <신설>	제3항제2호 및 제3호----- --. 1. ~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 외안 소판 부서명 〉

통일부 전략기획과	
연 락 처	(02) 2100 - 5772